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안규백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공포(24. 1. 16.) 및 시행 (26. 1. 17.)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

3. 주요내용

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운영할 기관으로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로 지정(제2조)

나. 교과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 학칙 규정(제4조)

다. 입학연령의 상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학 시기 등을 규정(제5조~제14조)

라. 학사학위과정인 기초군사훈련의 기간과 시기 등을 구체화(15조)

마. 학위 종류를 학칙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과정별 학위수여 요건과 절차 규정(제16조, 제17조)

바. 의무복무 기산일을 장교 임용일로 구체화하고 휴직 등 비복무기간을 제외토록 명확히 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상환 방법 및 절차, 환수유예 규정 등 마련(제18조, 제19조)

사.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과 교수·교관의 임명권자, 임명절차 및 직무 규정(제20조 ~ 제22조)

아.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운영을 위한 조직 및 부서의 임명기준과
사무분장 규정(제23조, 제24조)

자. 교육 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교육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제26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제정안,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2. ~ 2026. 1. 5.)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 국방부장관은 법 제2조에 따라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이하 “과학기술사관학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3조(사관생도)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②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에 준한다.

제4조(학칙) ①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5조(입학 등) ① 사관생도의 입학·퇴학 및 휴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한다.

② 사관생도는 입학 지원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③ 대학원에 입학할 사람의 정원·선발 및 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년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년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년

제7조(입학 시기 등) ①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내로 한다.

- ②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사학위과정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입학기일 전에 가입학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가입학 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입학한 사람에게서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제8조(군적) 사관생도는 입학한 날로부터 사관생도의 군적에 편입된다.

제9조(교과) 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제11조(휴업일 등)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 휴가
3. 개교기념일
4.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軍) 행사일

② 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 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과건 교육)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국내의 다른 학교나 부대 또는 외국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제13조(편입학 등) 사관생도의 전학과 과학기술사관학교로의 편입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4조(퇴학 사유)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매우 불량한 생도
 2.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관생도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생도
 3.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졸업할 가능성이 없는 생도
 4.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생도
- ②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사관생도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제15조(기초군사훈련)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군사훈련이란 과학기술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게 군인으로서 필요한 기초적인 군사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군사훈련이다. 기초군사훈련으로 그 기간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군사훈련은 학사학위과정 기간 동안 7주 실시한다.

2. 기초군사훈련은 하기 및 동기 휴가 기간 중 학칙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

3. 교장은 기초군사훈련의 기간 및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학위의 종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학위는 이학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이학사, 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7조(학위의 수여) ①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과학기술사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심사에 통과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다른 방법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8조(의무복무기간)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은 장교로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의무복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학비 등의 상환)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은 학비, 기숙사비, 수당, 지급 물품비, 급식비, 그 밖에 해당 학생의 교육에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가 재학할 당시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있는 4년제 국공립대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시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하 “상환금액”이라 한다)을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를

$$\text{상환금액} = \text{상환하여야 하는 경비} \times \frac{\text{의무복무월수} - \text{근무월수}}{\text{의무복무월수}}$$

계산할 때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상환금액을 한꺼번에 환수(還收)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⑥ 천재지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이(傷痍)·질병으로 인하여 상환금액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교장 등의 임명)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과 부교장을 둔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부교장은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교장은 과학기술사관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교관)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일반학 교관”이라 한다)와 강사 및 조교를 둔다.

제22조(교수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은 일반학교관 중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한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 일반학교관 중 교수 및 부교수는 교장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③ 일반학교관의 조교수는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및 조교는 교장이 학교의 교육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⑤ 교수 및 부교수 등에 대한 임명과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정원)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과 「국방대학교설치법」 제9조에 따른 특정직 국가공무원(이하 “특정직 국가공무원”이라 한다)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경우 군인 및 군무원과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일반학교관, 강사 및 조교의 정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대학의 교원 배치기준에 준하여 정한다.

제24조(부서의 설치 등)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학과·생도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교학과에는 교학과장, 생도대에 생도대장을 두며, 각 부서에 각각의 장을 둔다.

③ 교학과는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④ 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전역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대상자는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 중 취업지원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지원을 위하여 취업교육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교육운영위원회) ① 교육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교장·교학과장·생도대장과 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장이 된다. 다만 부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입학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2026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